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4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 : 안호영 · 윤준병 · 정을호

박희승 · 이병진 · 이학영

이원택・박 정・김주영

어기구 의원(총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 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 5. 생산조정직접직불제도
- 6.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 7.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제6장의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 원회의 설치)"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 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		
획의 수립) ①・② (생 략)	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u>		
	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u>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생 략)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2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u><신 설></u>	5. 생산조정직접직불제도		
<u><신 설></u>	6.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u><신 설></u>	7.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장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u>	제6장 <u>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u>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의		

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
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설치) ①
<u>심</u> 의·의결하
<u>7]</u>
<u>농업·농촌 공익기</u>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
<u>원회위원회</u>
② 위원회
<u>심의·의결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① 위원회
② ~ ⑷ (현행과 같음)